

# 질의에 대한 답변

수신 : 유준상(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)

발신 : 법무법인(유한)에이펙스

제목 : 대한요트협회장 취임과 관련된 연임제한 정관규정에의 해당 여부에  
대한 답변

## 1. 질의의 요지

귀하는 2009년부터 대한롤러경기연맹 제14대, 제15대 회장을 연임하고 2016.8.28.에 그 임기를 마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체육회 산하 어떤 종목단체의 임원도 맡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018. 5. 17.에 실시된 대한요트협회 임원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는 바, 위 대한롤러경기연맹의 회장으로 재직할 경력이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임제한규정에 해당하여 대한요트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.

## 2. 답변 의견

### 가. 대한요트협회 정관의 규정

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5조 제1항은 “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(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)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나. 위 정관의 규정에서 말하는 ‘연임’이란 현재 어느 한 종목단체의 회장 등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임기 종료와 동시에 연속하여 다시 임원직에 취임하려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위 정관의 규정상 연임제한은 어느 종목단체의 임원을 역임한 사람이 시간적 간격을 갖고서 다시 임원을 맡게 되는 ‘중임’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할 것입니다.

이러한 의미에서 대한요트협회는 2017. 6. 26.자로 위 정관 규정을 개정하였는 바, 종래의 규정이 “1회에 한하여 ‘중임’ 할 수 있다”고 하던 것을 “1회에 한하여 ‘연임’ 할 수 있다”로 바꾼 것입니다.

다. 따라서 질의자 유준상의 경우 대한롤러경기연맹의 회장에서 물러난 후 2년여 만에 다른 종목단체인 대한요트협회장을 맡는 것은 대한요트협회 개정전의 정관이 제한하고 있던 중임에는 해당할지 모르나 개정 후의 연임제한 규정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대한요트협회장에 취임하는 데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.

라. 본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본 법무법인의 심규철 변호사(02-2018-15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5. 21.

법무법인(유한) 에이팩스

담당변호사 심 규 철

